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5425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전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2024. 11. 7.

판결 선고2024. 11. 21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8,127,348원 및 그 중 7,726,103원에 대하여 2024. 3. 13.부터 2024. 5. 22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. 3. 13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23. 3. 13. 접수 제3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정희영

별지